

제5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11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12. 12) 상정

○ 제12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12. 12)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이 상 훈)

가. 제안이유

○ 제4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중인 강진석 옴부즈만을 제5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으로 재위촉하여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 있는 고충 민원처리 능력을 토대로

○ 고충민원을 시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의 고충을 해소함은 물론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고자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4대 강진석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을 제5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으로 재위촉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동의)

6. 소수의견

시민옴부즈만의 발전적인 역할을 위하여 단순 민원처리에 치우치지 말고 제도의 개선이나 고충처리, 시정의 감시 등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대함.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5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의안 번호	제456호
의결 년월일	2005. 12. 23 (제123회)

제출년월일 : 2005. 11. 18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제4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중인 강진석 옴부즈만을 제5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으로 재위촉하여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 있는 고충민원처리 능력을 토대로
- 고충민원을 시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의 고충을 해소함은 물론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고자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제4대 강진석 부천시시민옴부즈만을 제5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으로 재위촉

연 임 신 청 서

- 성 명 : 강 진 석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04-9번지
- 생년월일 : 1958년 9월 2일생
- 현직위 : 제4대 부천시시민음부즈만

본인은 부천시 시민음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5대 시민음부즈만으로 활동하고자 연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자기소개서 1부

2005. 10. .

제4대 부천시시민음부즈만

부 천 시 장 귀하

자 기 소 개 서

□ 인 적 사 항

- 성 명 : 강 진 석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04-9번지
- 생년월일 : 1958년 9월 2일생

□ 주 요 경 력

- 1977. 2 부천고등학교 졸업
- 1982. 2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졸업
- 2003. 8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졸업
- 1993~1995 부천고등학교 총 동창회장
- 1995년 JCI KOREA 부천 회장
- 1995~19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가사 조정위원
- 1995~199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 조정위원
- 1998년 부천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1998~2002 부천시의회 제3대 의원

□ 현 직

- 제4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04. 1. 1 ~)
- 부천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04. 3 ~)

□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인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시민 행정관인 시민옴부즈만(이하 “시민옴부즈만”이라 한다)이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소속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옴부즈만의 직무) 시민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이 행한 행위로 고충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개정 2001.07.27>
3. 시정을 감시하고 비위의 시정 등의 조치(이하 “시정 등의 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권고
4.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의 내용공표

제7조 (시민옴부즈만의 조직 등) ① 시민옴부즈만의 정수는 3인이내로 하고, 그 중 1인을 대표 시민옴부즈만으로 한다.

② 시민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07.29>

□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시민옴부즈만의 자격등) ① 시민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발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부천시의회의원이나 부천시지역구의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임한 경력이 있거나 사회봉사단체에서의 상당한 경력이 있는 자